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40 제출연월일 : 2024. 6. 2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겸영금지 등) ① ~ ③ (생	제8조(겸영금지 등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	<u><</u> 삭 제>
공사업자는 「방송법」제2조	
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	
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	
업 •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	
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	
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	
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	
업을 경영(겸영하거나 주식 또	
<u>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</u>	
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)할	
<u>수 없다.</u>	